

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5호서식] <개정 2020. 8. 5.>

○ ○ 보호관찰소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제 호

$\Gamma_{\text{H}}^{\text{H}}$
 $\Gamma_{\text{H}}^{\text{H}_2\text{O}}$
 $\Gamma_{\text{H}}^{\text{H}_2\text{O}}$

수 신 ○ ○ 지방검찰청 검사장(○ ○ 경찰서장)

발 신 ○○ 보호관찰소장 직인

제 목 피부착자 []범죄사실, []범죄의심 사실 통보

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[]범죄사실, []범죄의심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부착명령을 받은 사람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거지	
	직업	
통보내용	범죄 발생일시, 장소, 범행내용 등	
참고자료		